

의안번호	2219269
의 퇴 인	김민전의원
회 답 일	2026.8.21.
추계번호	26D286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69억 8,700만원, 2030년 4억 1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73억 9,700만원 (연평균 14억 7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지선)	2031	합계	연평균
시·도지사선거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 (안 제82조의2제2항제1호)	-	-	-	410	-	410	82
지역구국회의원선거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 (안 제82조의2제3항)	-	6,987	-	-	-	6,987	1,397
합계	-	6,987	-	410	-	7,397	1,479

주: 1. 시·도지사선거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(안 제82조의2제2항제1호)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(안 제82조의2제3항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는 대담·토론회 1회당 개최비용을 「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」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편성단가를 준용하고, 증가하는 개최 횟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개최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2조의2제2항제1호 (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)	시·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·도지사선거에서 개최하여야 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·토론회의 횟수를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하되,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	의무규정
2	안 제82조의2제3항 (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)	구·시·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개최하여야 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·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횟수를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하되,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2조의2제2항제1호 (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)	0	-
2	안 제82조의2제3항 (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·도지사선거에서, 구·시·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개최하여야 하는 대담·토론회의 법정 횟수가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현행법은 시·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·도지사선거에서, 구·시·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각각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·토론회(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)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대담·토론회 1회당 개최비용은 「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」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편성단가 중 개최 횟수에 연동되는 비목을 준용하여 산정하고,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한하여 추계하며 재·보궐선거는 고려하지 않음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⁾
-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3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2.1%	2.3%	2.0%	2.0%	2.0%

-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2028년(제23대 국회의원선거), 시·도지사선거는 2030년(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)에 실시되므로 해당 연도에만 추가재정 소요 발생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시·도지사선거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(안 제82조의2제2항제1호)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·도지사선거에서 대담·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
□ 본 추계에서는 2030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여야 하는 대담·토론회 횟수에 1회당 비용을 곱하여 산출

- (대담·토론회 추가 개최횟수) 2030년 24회로 추정
 -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는 시·도지사선거를 실시하는 16개 시·도²⁾마다 3회 이상이므로 48회이고,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·도지사선거 대담·토론회 등 개최 실적은 24회이므로 증가 개최횟수는 24회(=48회-24회)
- (1회당 비용) 2030년 1,710만원으로 추정
 - 「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」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편성단가 중 개최 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 항목을 추려낸 결과 1회당 1,580만원(2026년 기준)³⁾으로 추정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[표 2] 대담·토론회 1회당 비용 추정: 2027~2031년

	2027	2028(국선)	2029	2030(지선)	2031
1회당 비용	1,612	1,644	1,677	1,710	1,74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2026년 7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되어 2030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6개 시·도를 대상으로 함

3) 사례금 280만원(사회자·한국수어통역사·토론진행표 작성·방송관계자), 토론회장 임차료 350만원 및 세트 제작비 950만원의 합계. 방송시설이용료(송출료·장비사용료 등)는 「공직선거법」 제82조의2제10항 본문에 따라 공영방송사·지상파방송사가 부담하므로 제외

- 추계결과, 시·도지사선거의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30년 4억 1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시·도지사선거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(국선)	2029	2030(지선)	2031
추가 개최횟수(A, 회)	-	-	-	24	-
1회당 비용(B, 만원)	-	-	-	1,710	-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-	-	-	410	-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(안 제82조의2제3항)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구·시·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대담·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3회 이상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여야 하는 대담·토론회 횟수에 1회당 비용을 곱하여 산출
 - (대담·토론회 추가 개최횟수) 2028년 425회로 추정
 -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254개 선거구마다 3회 이상이므로 762회⁴⁾
 - 「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」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대담·토론회 등 개최 실적은 337회이므로 증가 개최횟수는 425회(=762회-337회)
 - (1회당 비용) 2028년 1,644만원으로 추정
 - 「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」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편성단가 중 개최 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 항목을 추려낸 결과 1회당 1,580만원(2026년 기준)⁵⁾으로 추정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4)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수는 확정 전이므로 제22대와 같은 254개로 가정

5) 사례금 280만원(사회자·한국수어통역사·토론진행표 작성·방송관계자), 토론회장 임차료 350만원 및 세트 제작비 950만원의 합계. 방송시설이용료(송출료·장비사용료 등)는 「공직선거법」 제82조의2제10항 본문에 따라 공영방송사·지상파방송사가 부담하므로 제외

[표 4] 대담·토론회 1회당 비용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	2027	2028(국선)	2029	2030(지선)	2031
1회당 비용	1,612	1,644	1,677	1,710	1,74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제23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2028년 69억 8,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5]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(국선)	2029	2030(지선)	2031
추가 개최횟수(A, 회)	-	425	-	-	-
1회당 비용(B, 만원)	-	1,644	-	-	-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-	6,987	-	-	-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69억 8,700만원, 2030년 4억 1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73억 9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(국선)	2029	2030(지선)	2031	합계	연평균
시·도지사선거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	-	-	-	410	-	410	82
지역구국회의원선거 대담·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	-	6,987	-	-	-	6,987	1,397
합계	-	6,987	-	410	-	7,397	1,47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대담·토론회 1회당 비용은 2026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편성단가를 준용하며, 개최 실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